

# 입양 지원 (Adoption Assistance)

입양 지원은 적격한 현역 및 은퇴자들에게 입양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.

## 입양 가족을 위한 지원

연금국의 지원 프로그램은 은퇴자, 생존 배우자 및 연금국 가입자에게 입양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입양 비용은 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 경비부터 입양 기관 및 변호사 비용까지 다양합니다.

이 보조금은 [Relief of Conscience 기금](#)에서 일부가 제공됩니다.

## 보조금 액수

입양 아동 1명당 \$6,500

## 자격요건

입양 시, 다음의 신청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:

- 신청자는 미국 장로교 또는 해외한인장로회(KPCA) 교회, 노회, 대회, 교단 기관 또는 제휴 단체\*에서 사역하고 있거나 은퇴자 또는 생존 배우자여야 합니다.
- 신청자는 의료보험 또는 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, 은퇴 또는 유족 연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.
- 입양 자녀는 만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.

\*제휴 단체는 노인 주택 및 보육 시설, 대학, 캠프 및 컨퍼런스 센터가 포함됩니다.

## 보조금 신청방법

입양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, 연금국(800-773-7752)(800-PRESPLAN)(TTY: 711)으로 연락 주십시오.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다음 문서를 연금국에 제출해야 합니다.

- **국내 입양:** 최종 입양 확정 판결 사본-
- **국제 입양:** 최종 입양 확정 판결 사본 및 아동의 여권 또는 아동을 본국에서 해외로 이동할 수 있는 서면 허가서 사본

## 추가 지원

입양보조금 신청자격이 있고 입양 비용이 사용 가능한 정부 세금 공제 및 입양 지원을 초과하여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[긴급 지원금](#)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제한적인 자원과 신청 건수를 고려하여 입양비용에 대한 긴급 지원금은 연금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.

## 해외 입양된 자녀를 위한 건강 검진

의료보험(Highmark Blue Cross Blue Shield) 가입자가 해외에서 입양할 경우, 해외 입양 아동에 대한 보건 필수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 혜택은 만 18세 이하 입양 자녀에게 제공됩니다.

## 도움이 필요하신가요?

800-773-7752(800-PRESPLAN)(TTY: 711)로 연금국에 문의해 주십시오.

